

배포 2026. 7. 15.(수)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16.(목) 06:00
(지 면) 2026. 7. 16.(목) 석간

민생물가 안정화 및 학원 운영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학원 신고포상금 최대 10배 인상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 기능 개선으로 불법 사교육 행위 신고와 신고포상금 신청의 편의성 제고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의 자율적 감시 기능의 강화를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고자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 관리 관계장관 특별팀(TF)' 2차 회의(2026.2.26.)를 통해 발표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마련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학원·교습소가 각각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현행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또한 ②표시·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와 ③교육감이 정한 교습 시간을 위반하여 교습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현행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내로 인상된다.

<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위반행위	신고 대상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조항	현행	개선
① 무 등록·미 신고 교습행위	학원법 §6 ① 및 §14 ①	제1호	20만 원	200만 원 이내
② 교습비 초과 징수	학원법 §15 ④	제3호	10만 원	100만 원 이내
③ 교습 시간 위반	학원법 §16 ②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시행일 이후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의 불법 사교육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사교육 신고센터’를 개편하였다. 별도 누리집으로 운영되던 불법 사교육 신고 창구를 교육부 누리집(moe.go.kr)으로 통합하여 교육 관련 신고 창구를 단일화하였다. 또한, 정부 통합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비밀번호를 따로 기억하지 않아도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등) 등으로 편리하게 로그인하여 신고하고,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누리집(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신청 절차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교육부 누리집의 불법 사교육 신고 센터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서면으로 신고포상금을 별도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7월부터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민생물가 안정 및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6월 말 기준으로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개소를 점검하여 교습비 관련 1,286건을 포함 총 5,021건을 적발하였고, 교습정지와 고발·수사의뢰 등 총 6,691건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개정은 민간의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습비 초과 징수, 교습 시간 초과 등 일부 학원의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 개요

담당 부서	평생교육지원관 평생학습정책과	책임자	과장	김주연 (044-203-6363)
		담당자	사무관	장주영 (044-203-6378)
			사무관	박인환 (044-203-6386)
			주무관	송민호 (044-203-6382)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원 등의 불법 교습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원 등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교습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등록·신고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17. ~ 5.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교육부령 제 388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중 “20만원”을 “200만원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0만원”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u>20만원</u> 2. (생략) 3. 영 제17조의5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행위: <u>10만원</u> ② ~ ⑥ (생략)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 ----- -----. 1. ----- ----- <u>200만원 이내</u> 2. (현행과 같음) 3. ----- ----- <u>100만원 이내</u> ② ~ ⑥ (현행과 같음)

교육부 불법 사교육신고센터 개요

- (접속경로) 교육부 누리집(moe.go.kr) - 국민참여·민원 - 신고고충처리 -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메인화면

국민참여·민원

참여·소통

민원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신고·고충처리

부패·공익신고 등

국민참여·민원

교육부 소식

정책

정보·법령

교육부 소개

아린이 홈페이지영문(ENG) 홈페이지SNS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전체메뉴

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불법사교육신고센터

로그인

안내사항

신고대상

무등록 학원, 미신고 고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과대광고,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행위를 하는 학원 등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학원, 고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입시바리에 대한 제보는 입시바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 그 외의 신고는 국민신문고(epeople.go.kr)로 신고 바랍니다.

로그인 화면(정부 통합로그인 도입)

국민참여·민원

참여·소통

민원

규제합리화

적극행정

신고·고충처리

부패·공익신고 등

국민참여·민원

교육부 소식

정책

정보·법령

교육부 소개

아린이 홈페이지영문(ENG) 홈페이지SNS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전체메뉴

국민참여·민원신고·고충처리불법사교육신고센터

로그인

로그인 방식을 선택해주세요.
정부 통합로그인은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연계된 모든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 서비스입니다.

☒ SSO 통합 로그인

정부 통합로그인

아직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가 아니신가요? 사용자 등록>

정부 통합인증(Any-ID) 사용자 관리>

모바일 신분증

스마트폰의 모바일 신분증을 스캔

증서 간편 인증

내야지, 카카오톡, 네이버 등 앱에서 발급받은 증서 간편 인증을 이용

공동인증서

개인 컴퓨터, USB 등에 보관되어 있는 인증서를 로그인

금융인증서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발급한 금융 계좌별 인증서로 로그인

민간ID

네이버, 카카오, 메타크라우드 로그인

신고포상금 신청 화면

신고포상금을 받고자하는 경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포상금 지급

거래은행

은행선택

계좌번호

('-' 제외)